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76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오기형 · 김영환 · 박선원
문대림 · 박해철 · 김준환
김 윤 · 강준현 · 정태호
남인순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 다.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 3).
-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외에 매점매석 물품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조의2).

마.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29조).

바. 몰수 대상 압수물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주무부장관은 제1항”으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과·징수”를 “산정기준,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신고포상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2. 매점매석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행강제금)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7조를”을 “제7조제1항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단서 중 “때”를 “때(제9조에 따른 주무부장의 명령에 따라 해당 물품이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압수물품의 매각) 제29조의2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무부장관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 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 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u>재정경제부 장관</u> 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 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① ----- ----- ----- <u>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u> <u>부장관</u> ----- ----- -----.
<신 설>	② <u>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u> <u>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u> <u>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u> <u>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u>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u> <u>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u> <u>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u> <u>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신 설>	③ <u>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u> <u>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u> <u>요청을 따라야 한다.</u>
제2조의2(과징금) ① <u>재정경제부</u> <u>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u> <u>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u>	제7조의2(과징금) ① <u>주무부장관</u> <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u>

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위
탁-----.

④ -----산
정기준, 부과·징수 -----

--.

⑤ 주무부장관-----

-----.

제7조의3(신고포상금) ① 재정경
제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
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
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

<u>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u> <u><신 설></u>	<u>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u> <u>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u> <u>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1. 해당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u> <u>2. 매점매석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u> <u>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u> <u>4.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 <u>제9조의2(이행강제금)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u>
--	---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u> <u>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u>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 -----
---	--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u>위임하거나, 다른</u> <u>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u> -----.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7조제1항을----- ----- -----.
제29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u>2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 ----- ----- <u>5천만원</u>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u>3천만원</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 ----- ----. ----- ----- <u>때(제9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u> -----.
<신설>	제29조의3(압수물품의 매각) 제29조의2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u>우려가 있을 경우 그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 다.</u>
--	---